

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26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7. 3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조문 정비 등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 - 현행 2023년 12월 31일 → 연장 2028년 12월 31일
- 나.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